



분할급여대여(전환)신청서

※ 분할급여대여(전환)는 퇴직시점 대여잔액이 세후 퇴직급여금의 60%이내인 회원이 분할급여금 신청시, 분할급여금 가입액 증액을 위해 이용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※ 아래의 「주요내용」 확인 후 작성하시고, □란에는 ✓표시하여 주십시오.

※ 주소, 연락처 등 인적사항(개인정보)이 기존 등록된 정보와 상이할 경우 자동 변경됩니다.

인 적 사 항	성명	홍길동	회원번호	1	2	3	4	5	6
	주민등록번호	700101 - 1XXXXXX		휴대전화번호	(010) 1234 - 5678				
	자택주소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, 한국교직원공제회관							
	자택전화번호	(02) 123 - 4567		E-mail	gildong@ktcu.or.kr				

대 여 신 청 사 항	대여종류	☒ 분할급여대여(전환)						
	신청금액	금 오천만 원 (₩ 50,000,000) ※ 10만원 단위로 기재						
		※ 분할급여대여 신청 금액은 기대여금에서 전환되므로 실제 금액이 송금되지 않음						
	대여금상환 [자동이체신청필수]	은행 농협 계좌 123-45-678912	상환기간 (원리금 균등상환)	8년				
	상환이체일	☐ 7일 ☒ 17일 ☐ 25일	상환기준일	☒ 17일(필수확인) ※ 월상환액 적용 및 이자계산 기준일				
지급내역서 수령지	☒ SMS ☐ E-mail ☐ 미발송 ※ 미선택시 발송되지 않음							



약 정 서

본인은 귀회와 대여거래를 함에 있어 귀회의 정관 및 대여규정에 명시된 제반사항과 아래의 각 조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합니다.

제1조(대여이율 변동) 대여이율은 퇴직 전 보유한 대여종류와 관계없이 분할급여대여의 금리(변동금리)가 적용됨을 확인하고, 변동되는 금리는 귀회의 모바일 APP, 홈페이지 또는 문자서비스를 통해 인지한다.

제2조(대여원리금 상환) 대여원리금의 상환을 위해 **대여 신청 시 반드시 자동이체를 신청**해야 하며, 약정한 대여기간의 만료일전일지라도 중도에 대여원리금의 부분 또는 전액을 상환할 수 있고 중도 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음을 인지한다.

제3조(상환기준일) **상환기준일은 대여원리금 균등상환액을 적용하는 기간의 기준일 및 1회차 납부월, 부분상환 익월, 대여이율 변경월의 이자를 일할계산하는 기준일로 매월 17일**임을 인지한다.

제4조(연체이자 기산) 대여원리금은 상환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상환을 하여야 하며, 상환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귀회의 정해진 **연체이율에 따라 대여원리금을 상환**하기로 한다.

제5조(기한의 이익상실) 대여금 수령 후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인은 귀회의 대여(채무)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로 즉시 변제 의무를 지겠으며, **본인의 장기저축급여 분할 급여금으로 미상환 대여원리금을 귀회가 직권으로 상계처리**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.(별도의 청구가 없는 경우 상계 후 잔여 분할급여금은 분할급여금 월지급액 지급 계좌로 지급한다.)

가. 분할급여금의 해지, 사망 등으로 **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**

나. 대여원리금 상환에 관한 **채무불이행(연체)**이 있는 경우 (6개월 이상 연체 등)

다. 상계처리 대상 급여금(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)에 대한 **가압류,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지**가 접수된 경우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한 **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**가 있는 경우

라. **개인채무자 회생신청 또는 파산신청 결정통지문**을 법원으로부터 접수한 경우

제6조(대여잔액 상환) 기한의 이익상실로 대여원리금을 상계처리하고 남은 대여잔액은 귀회에서 정한 기간 내 상환해야 한다.

제7조(면책사항)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본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귀회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가. 본인이 제출한 대여신청서 및 제반서류의 진위확인이 불가하거나 위·변조된 경우

나. 주소, 전화번호, 등 주요 변경사항을 본인이 귀회에 통보하지 않아 안내사항(대여금 미납·연체·상계처리 등)을 미수령 한 경우

다. 귀회 모바일 APP, 홈페이지의 ID, 비밀번호, 각종 인증서 등의 관리소홀에 따른 본인의 귀책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

라. 귀회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통신기기 및 회선장애, 전산시스템 장애 등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

상기 내용이 본인의 귀책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귀회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, 귀회의 정관과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대여를 신청합니다.

2023 년 11 월 27 일

신청인 홍길동 홍길동



(대여)개인(신용)정보 수집 · 이용 · 제공 동의서[필수] I

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한국교직원공제회의 대여 거래와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(신용)정보를 수집 ·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[개인정보 보호법] 제15조, 제22조, 제23조, 제24조 및 제24조의2, [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] 제15조, 제32조 및 제34조, [한국교직원공제회법] 제25조의2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

수 집 · 이 용 목	- 대여 거래 설정 · 유지 · 이행 · 관리 - 법령상 의무이행, 대여 거래와 관련한 분쟁 해결 및 민원 처리
수 집 · 이 용 활 목	- 공통정보 : 성명, 고유식별정보, 회원번호, 연락처(휴대전화번호, 자택), 주소(자택, 소속기관), 이메일, 재직 정보(소속기관, 부서, 직위, 고용형태, 휴직기간 및 복직일자), 성별, 국적, 음성데이터 - 대여 거래 정보 : 대여종류 및 조건(신청구좌, 대여 이율, 상환기간 등), 대여 거래의 설정 · 유지 · 이행 · 관리를 위한 상담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, 거래요청처(금융기관, 계좌번호) - 전자금융 관련 정보 : 접속로그, 접속 IP, 전자서명정보 -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: 연소득,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정보 등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- 무이자 대여의 경우 : 건강상태(민감정보:질병명, 입원기간) 및 주택파손 정보 - The-K복지누리대여의 경우 : 결혼예정일 또는 혼인신고일, 가족정보(자녀 및 배우자 성명, 자녀 생년월일, 자녀 입양일), 주택현황 정보 - 보증대여의 경우 : 건강보험자격득실에 관한 정보, 건강 ·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관한 정보, 의료급여 자격득실에 관한 정보, 의료급여 증명에 관한 정보, 소득금액증명에 관한 정보, 국가유공자여부 확인에 관한 정보
보 유 · 이 용 기	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(단, 거래 종료일 후에는 분쟁해결,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이행 및 본회의 리스크 관리업무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 · 이용 됩니다.) ※ 거래 종료일이란 본회와 거래 중인 모든 공제제도의 해지 및 서비스가 종료한 날을 의미합니다.
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 이 익	위 개인(신용)정보 수집 · 이용에 관한 동의는 대여 거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 하셔야만 대여 거래와 관련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.
개인(신용)정보 수 집 · 이 용 동 의 여 부	본회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(신용)정보를 수집 ·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☒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고 유 식 별 정 보 수 집 · 이 용 동 의 여 부	본회가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·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※ 고유식별정보 : 주민등록번호, 운전면허번호, 여권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☒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민 감 정 보 수 집 · 이 용 동 의 여 부 (무이자대여의 경우에 한함)	본회가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 ·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☒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

(대여)개인(신용)정보 수집 · 이용 · 제공 동의서[필수] II

개인(신용)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

한국교직원공제회의 대여 거래와 관련하여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개인(신용)정보를 [개인정보 보호법] 제17조, 제22조, 제24조 및 제24조의2, [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] 제32조 및 제34조, [한국교직원공제회법] 제25조의2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

1. 거래목적 달성을 위한 개인(신용)정보 제공

개 인 (신 용) 정 보 를 제공받는 기관	- 교육청(교육행정정보시스템), WEB-EDI분회 등 회원이 소속된 기관, 금융결제원, 농협 - 보증대여의 경우 : 서울보증보험 및 모집위탁 대리점
제 공 할 개 인 (신용)정보의 항목	성명, 고유식별정보, 생년월일, 회원번호, 대여 거래 정보
제공받는 기관의 이 용 목 적	신용도 확인, 부담금 납부, 자동이체 신청 및 고지 등 대여 거래관계의 설정 · 유지 · 이행 · 관리
제공받는 기관의 개인(신용)정보 보유·이용 기간	개인(신용)정보가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 달성 시까지(관련 법령의 별도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름)

2. 대여 거래 관련한 분쟁(민원) 해결을 위한 개인(신용)정보 제공

개 인 (신 용) 정 보 를 제공받는 기관	교육청, WEB-EDI분회 등 회원이 소속된 기관, 법원, 검찰, 경찰
제 공 할 개 인 (신용)정보의 항목	성명, 고유식별정보, 생년월일, 회원번호, 소속기관, 연락처(휴대전화번호, 자택), 주소(자택, 소속기관) 등의 정보 중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
제공받는 기관의 이 용 목 적	대여 거래와 관련한 분쟁(민원) 해결
제공받는 기관의 개인(신용)정보 보유·이용 기간	개인(신용)정보가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 달성 시까지(관련 법령의 별도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름)
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 이 의	위 개인(신용)정보 수집 · 이용에 관한 동의는 대여 거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대여 거래와 관련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.
개인(신용) 정보 제공 동의 여부	본회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☒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고유식별 정보 제공 동의 여부	본회가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※ 고유식별정보 : 주민등록번호, 운전면허번호, 여권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☒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2023 년 11 월 27 일

본인 홍길동 홍길동

분할급여대여(전환) 주요내용

■ 분할급여대여(전환)는 퇴직시점 대여잔액이 세후 퇴직급여금의 60%이내인 회원이 분할급여금 신청시, 분할급여금 가입액 증액을 위해 이용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1. 신청자격

- ▶ 분할급여금에 가입 예정인 회원 중 퇴직시점 대여 잔액이 세후 퇴직급여금의 60% 이내인 회원
- ▶ 퇴직일 이후에 부분상환으로 대여 잔액이 퇴직급여금의 60% 이내로 하락하게 되더라도 분할급여대여(전환)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.

2. 신청방법

- ▶ 분할급여금 신청 시 제출하는 장기저축급여 청구서와 분할급여금 신청서와 함께 분할급여대여(전환) 신청서류를 본부 또는 해당 시·도지부로 송부 (**퇴직일 기준 10영업일 이내 신청 가능**)
- ▶ 분할급여대여(전환) 신청 서류
 - 분할급여대여(전환) 신청서 1부
 -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별지) 각 1부
 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1) 사본(앞면) 1부
 - 부담금 자동이체 신청서 1부 (*분할급여대여 신청 시 반드시 자동이체 신청 필수)

3. 신청금액

- ▶ 분할급여금 신청 시 분할급여대여(전환)를 신청할 경우 신청금액은 {분할급여금 신청 금액 - (퇴직가정급여금 - 대여 잔액)}(10만원 단위 절상)을 가입하여야 합니다.
- ▶ 분할급여대여(전환) 지급 이후에는 분할급여금의 잔여 분할부담원금 60% 이내에서 재대여를 통해 대여금액, 상환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4.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

- ▶ 최저 1년에서 최장 10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(* 분할급여대여 300만원 이하인 경우 최장 3년)
- ▶ 분할급여금 가입기간 미만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▶ 상환기준일은 매월 납부하는 대여원리금 균등상환액을 적용하는 기간의 기준일 및 1회차 납부월, 부분상환 익월, 대여이율 변경월의 이자를 일할계산하는 기준일입니다.
 - ※ 7, 17, 25일 중 신청하는 부담금 자동이체일은 상환기준일과는 관계가 없는 원리금 상환일입니다.
- ▶ 대여상환액은 본인통장에서 자동이체되며, 대여 신청 시 반드시 자동이체를 신청하셔야 합니다.
 - 홈페이지에서 신청(공동인증서 필요) 또는 회원콜센터(1577-3400) 전화 및 녹취를 통한 신청
 - 우편 신청 : 부담금 자동이체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(FAX 신청 불가)
- ▶ 대여기간 만료 전에 부분 및 일시상환이 가능하며,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.
- ▶ 분할급여금을 중도에 해약할 경우 분할급여대여 미상환금은 분할급여금과 상계된 후 분할급여금 지급 계좌로 입금됩니다.

5. 대여 이율

- ▶ 시중 금리 변동에 따라 대여 이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(변동금리)

6. 대여 연체

- ▶ 분할급여대여 월상환액을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, 연체가 6회 동안 지속될 경우 즉시 변제의무가 발생하여 분할급여금으로 미상환 대여원리금 전액을 직권으로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. (상계된 후 잔여 분할급여금은 별도의 청구 없이 분할급여금 지급 계좌로 지급됩니다.)
- ▶ 주소, 전화번호 등 주요내용 변경 시에는 반드시 본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. 귀회에 주소, 전화번호 등 변경사항을 통보하지 않아 연체 사실, 상계 처리 등의 안내 사항을 미수령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귀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.

7. 기타

- ▶ 주소, 연락처 등 인적사항(개인정보)이 기존 등록된 정보와 상이할 경우 자동 변경됩니다.

분할급여대여 세부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회원콜센터(1577-340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부담금 자동이체 신청서

※ 휴직, 소청/소송 회원 및 적립형, 분할급여대여 신청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신청 회원

성명	홍길동	생년월일	1970년 01월 01일
회원번호 [필수 기재]	1 2 3 4 5 6	소속기관	한국교직원공제회
기간 [휴직, 소청/소송]	년 월 일 ~ 년 월 일		

2. 자동이체 신청 급여 내역 [☒ 신규 ☐ 변경 ☐ 해지]

급여명	급여번호	금액(원)	급여명	급여번호	금액(원)
분할급여대여					

* 적립형 : 급여명, 급여번호, 금액 작성 / 휴직, 소청/소송 또는 분할급여대여 신청 : 급여명만 작성

3. 자동이체 신청 및 동의 [반드시 본인 명의 예금계좌 기재]

금융기관	농협	계좌번호	123-45-678912
이체개시연월 [휴직자에 한함]	년 월	장기저축급여 지정 이체일	☐ 17일 ☐ 25일
		대여, 적립형 지정 이체일	☐ 7일 ☒ 17일 ☐ 25일

※ 장기저축급여와 대여, 적립형의 지정 이체일을 반드시 구분하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.

유의사항	■ 자동이체는 휴직, 소청/소송 회원(대여), 분할급여대여, 목돈·퇴직생활급여 적립형 가입회원만 가능합니다. ■ 대여 월상환액은 25일 인출이 해당 월 마지막 이체인 관계로 미인출 시 해당 월 말일까지 개별 납부하셔야 연체이자 발생하지 않습니다. ■ 자동이체 해지 시 개별 납부를 원하실 경우 본회로 문의 바랍니다. (회원콜센터 1577-3400) ■ 퇴직 후 급여금 미청구 시 자동이체가 유지되오니, 반드시 자동이체 해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■ 퇴직일 이후에는 장기저축급여 부가금(이자)이 계상되지 않으며,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24조의2 (소멸시효)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급여금이 소멸됩니다.	
	첨부서류	■ 공통 신분증 사본 1부 ■ 추가 휴직자 : 휴직발령통지서 또는 휴직확인서(나이스, EDI에서 휴직등록 시 제외)

위와 같이 부담금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.

2023년 11월 27일

신청인 홍길동 홍길동

(서식 개정일자 : 2021. 04. 01.)